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85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한병도・황운하・진선미

장철민 • 이춘석 • 이해식

박용갑 • 이원택 • 정태호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중 "때에는"을 "때,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	③		
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u>때에는</u>	<u>때, 공</u>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때에는		